



MATERION

1. 화학제품과 회사에 관한 정보

| | | |
|----------------------|--|--|
| 가. 제품명 | Tantalum Powder | |
| 기타 식별 수단 | | |
| SDS 번호 | H03 | |
| 동의어 | 190D Pure Ta | |
| 나. 제품의 권고용도와 사용상의 제한 | | |
| 제품의 권고 용도 | 컴퓨터의 제조, 전자 및 광학 제품, 전기 장비 과학적 연구 및 개발 기타 : 의료 및 방어 장비 제조 | |
| 사용상의 제한 | 전문 용도 : 공공 도메인 (행정, 교육, 엔터테인먼트, 서비스, 장인) 소비자가 사용 개인 세대 (= 일반 = 소비자) | |
| 다. 공급자정보 | | |
| 회사명 | Materion Newton Inc. | |
| 주소 | 6070 Parkland Boulevard Mayfield Heights OH 44124 미국 | |
| 전화번호 | 1+216.383.4019 | |
| 이메일 | ehs@materion.com | |
| 담당자 | Theodore Knudson | |
| 긴급전화번호 | See Section 16. | |
| 수입자 | | |
| 회사명 | See above. | |
| 물질안전보건자료 번호 | H03 | |

2. 유해성·위험성

| | | |
|---------------|-------------------------------|----------------------|
| 가. 유해성·위험성 분류 | | |
| 물리적 위험성 | 인화성 고체 | 구분 2 |
| 건강 유해성 | 급성 독성, 경구 특정 표적장기 독성-1회 노출 | 구분 4 구분 3 호흡기계 자극 |
| 환경 유해성 | 분류되지 않음. | |

나. 예방조치문구를 포함한 경고 표지 항목

| | | |
|------------|---------------------------------|--|
| o 그림문자 | | |
| o 신호어 | 경고 | |
| o 유해·위험 문구 | | |
| H228 | 인화성 고체. | |
| H315 | 피부에 자극을 일으킴 | |
| H319 | 눈에 심한 자극을 일으킴. | |
| H335 | 호흡기계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
| o 예방조치 문구 | | |
| 예방 | | |
| P240 | 용기와 수용설비를 접합시키거나 접지하시오. | |
| P261 | 분진의 흡입을 피하시오. | |
| P264 | 취급 후에는 취급 부위를 철저히 씻으시오. | |
| P280 | (보호장갑·보호의·보안경·안면보호구)를(을) 착용하시오. | |
| 대응 | | |

P304 + P340
P302 + P352
P305 + P351 + P338
P370 + P378

흡입한 경우: 환자를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편하게 호흡할 수 있도록 할 것.
피부에 묻으면 다량의 물과 비누로 씻으시오.
눈에 들어갔을 때: 물로 몇 분간 조심해서 씻어낼 것. 콘택트렌즈가 있을 경우 쉽게 할 수 있으면 제거할 것. 계속해서 씻을 것.
화재 시 불을 끄기 위해 적절한 소화제를 사용하십시오.

저장

P403 + P233

용기는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단단히 밀폐하여 저장하십시오.

폐기

P501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다. 유해성·위험성 분류기준에 포함되지 않는 기타 유해성·위험성(예 : 분진폭발 위험성):

알려지지 않음.

보충정보

자세한 내용은 +1.216.383.4019에서 제품 관리 부서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3. 구성성분의 명칭 및 함유량

| 화학물질명 | 관용명 및 이명 | CAS 번호 | 식별번호 | 함유량(%) |
|----------|----------|-----------|----------|--------|
| Tantalum | | 7440-25-7 | KE-33006 | 100 |

4. 응급조치 요령

가. 눈에 들어갔을 때

즉시 다량의 물로 15분 이상 씻음. 콘택트 렌즈를 제거하고 눈을 크게 뜰 것.

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즉시 다량의 물로 적어도 15분간 씻어낼 것. 자극이 발생하거나 지속될 경우 의사의 진료를 받을 것.

다. 흡입했을 때

신선한 공기가 있는 곳으로 옮기고 호흡하기 쉬운 자세로 안정을 취하십시오. 증세가 나타나거나 지속되면 의료진에 문의하십시오.

라. 먹었을 때

물로 입안을 씻어낸 후 물을 많이 마시게 할 것.

마. 기타 의사의 주의사항

증상에 따라 치료할 것.

가장 중요한 증상/영향, 급성 및 지연된

알려지지 않음.

일반적인 조치사항

불편함을 느끼면, 의사의 진찰을 받을 것 (가능하면 라벨의 표시사항을 보여줄 것).

5. 폭발·화재시 대처방법

가. 적절한 (및 부적절한) 소화제
적절한 소화제
부적절한 소화제

건조 모래, 염화 나트륨 분말, 흑연 분말 또는 Met-L-X 분말.
이산화탄소(CO2), 물 분무 또는 물 안개.

나. 화학물질로부터 생기는 특정 유해성 (예: 연소시 발생 유해물질)

설정되지 않음.

다. 화재 진압 시 착용할 보호구 및 예방조치

착용할 보호구

화재 발생시 공기호흡기와 전신 보호복을 사용할 것.

예방조치

위험없이 처리할 수 있으면 용기를 화재 지역으로부터 옮길 것.

일반 화재 위험성

특정 화재 또는 폭발 위험이 명시되지 않음.

특정 방법

표준 소방 절차를 준수하고 기타 관련된 물질의 위험성을 고려할 것.

6. 누출사고시 대처방법

가.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사항 및 보호구

필요없는 인원은 멀리 대피시킬 것. 누출 지역으로부터 바람이 부는 반대 방향으로 사람들을 대피시킬 것. 소지하는 동안 적절한 보호 장비 및 보호복을 착용할 것. 분진의 흡입을 피할 것. 적절하게 환기가 되도록 할 것. 누출정도가 심각해서 통제할 수 없다면, 관할기관에 보고해야 함. 개인 보호구에 관한 사항은 MSDS 제8항을 참조할 것.

나.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사항

하수도, 수로 또는 지하로 방출시키지 말 것.

다. 정화 또는 제거 방법

공기 중에 분진의 분산을 피할 것(예 : 압축 공기로 표면의 분진 청소). 분진을 HEPA 필터를 갖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여 수거할 것. 제품은 물과 혼합되지 않고 수표면에서 확산됨. 위험없이 할 수 있는 경우 누출물을 막을 것.

대량 누출 : 물로 적시고 추후 처리를 위해 제방을 쌓을 것. 폐기물 용기로 물질을 처리합니다. 제품을 수거 후 누출 지역을 물로 세척할 것.

소량 누출: 누출물을 쓸거나 진공청소기를 이용하여 수거한 후 적절한 용기에 담아 폐기할 것. 잔여 오염을 제거하기 위해 표면을 철저히 세척할 것.

절대로 얼질러진 것을 다시 사용하려고 본래 용기에 넣지 말 것. 폐기물 처리에 관한 사항은 MSDS 제13항을 참조할 것.

7. 취급 및 저장방법

가. 안전취급요령

분진 생성 및 축적을 최소화시킬 것. 분진이 생성되는 곳에 적절한 배기장치를 설치할 것. 먹거나 삼키지 말아야 함. 분진의 흡입을 피하시오. 장기간 노출을 피할 것. 사용할 때에는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지 말 것. 적합한 개인 보호장비를 착용할 것. 취급 후에는 손을 철저히 씻으시오. 올바른 산업 위생 절차를 준수할 것.

나. 안전한 저장 방법 (피해야 할 조건을 포함함)

잠금장치가 있는 저장장소에 저장하시오. 단단히 밀폐된 용기에 보관. 환기가 잘 되는 곳에 보관하시오. 양립할 수 없는 물질과 멀리하여 보관할 것(본 MSDS의 10항을 참조).

8. 노출방지/개인보호구

가. 화학물질의 노출기준, 생물학적 노출기준 등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 물질 | 종류 | 값 | 형태 |
|--------------------------|-----|---------|----|
| Tantalum Powder | TWA | 5 mg/m3 | 흙. |
| 구성성분 | 종류 | 값 | 형태 |
| Tantalum (CAS 7440-25-7) | TWA | 5 mg/m3 | 흙. |

생물학적 노출기준

구성성분에 대해 알려진 생물학적 노출기준은 없음.

나. 적절한 공학적 관리

양호한 전체환기를 실시할 것. 환기 속도는 작업장 여건에 맞아야 함. 적용이 가능하면 공정기밀 설비, 국소배기장치 또는 기타 공학적 관리를 사용하여 공기 중 수준이 권고 노출한계 이하가 되도록 유지시킬 것. 노출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경우 공기 중 수준이 허용되는 수준이 되도록 유지시킬 것. 공학 측정만으로 분진 입자의 농도를 OEL 미만으로 유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절한 호흡보호구를 착용해야 합니다. 물질이 연마, 절단, 또는 사용되어서 먼지를 발생시키는 경우, 적당한 국소배기장치를 이용하여 노출을 권장 노출한계 이하로 유지하십시오.

다. 개인 보호구

- 호흡기 보호
- 눈 보호
- 손 보호
- 신체 보호

먼지 필터가 달린 방독면을 착용하십시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인증을 받은 분진 및 증기 호흡구. 특히 용융, 주물, 기계 가공, 연마, 용접 및 분말 취급과 같은 입자를 생성하는 작업중에 안구 부상 위험이 제기되는 경우에는 승인된 보안경, 고글, 전면 마스크 및/또는 용접공 헬멧을 착용한다. 미립자나 용액과 접촉을 방지하기 위하여 장갑을 착용하십시오. 적절한 보호복을 착용할 것.

위생대책

식품 및 음료로부터 멀리할 것. 물질 취급 후 먹거나, 마시거나 흡연하기 전에 씻는 등 항상 양호한 개인 위생 기준을 준수할 것. 작업복과 보호용 장비를 정기적으로 세척하여 오염물질을 제거할 것.

9. 물리화학적 특성

가. 외관 (물리적 상태, 색 등)

| | |
|--------|------|
| 물리적 상태 | 고체. |
| 형태 | 분말. |
| 색 | 암회색. |

나. 냄새

없음.

다. 냄새 역치

해당없음.

라. pH

해당없음.

마. 녹는점/어는점

| | |
|-----|---------------------|
| 녹는점 | 2996 °C (5424.8 °F) |
| 어는점 | 해당없음. |

바. 초기 끓는점과 끓는점 범위

해당없음.

| | |
|----------------------|-------------------------------------|
| ○ 심한 눈 손상 또는 자극성 | 눈에 자극을 일으킬 수 있음. |
| ○ 호흡기 과민성 | 호흡기 감작제가 아님. |
| ○ 피부 과민성 | 이 제품은 피부민감을 일으키지 않을 것으로 간주됨. |
| ○ 발암성 | 인체 발암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
| ○ 생식세포 변이원성 | 분류되지 않음. |
| ○ 생식 독성 | 본 제품은 생식 또는 발달 영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되지 않음. |
| ○ 특정 표적장기 독성 (1회 노출) | 기도 자극. |
| ○ 특정 표적장기 독성 (반복 노출) | 분류되지 않음. |
| ○ 흡인 유해성 | 흡인 유해성이 아님. |

12. 환경에 미치는 영향

가. 생태독성

수생환경 유해성, 급성

본 제품은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그러나 이는 다량 또는 잦은 누출로 인해 환경에 유해성을 갖거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본 제품은 환경 유해성으로 분류되지 않음. 그러나 이는 다량 또는 잦은 누출로 인해 환경에 유해성을 갖거나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은 아님.

나. 잔류성 및 분해성

본 물질의 분해성에 대한 이용 가능한 자료가 없음.

다. 생물 농축성

자료없음.

라. 토양 이동성

제품은 물과 혼합되지 않고 수표면에서 확산됨.

마. 기타 유해 영향

본 성분으로부터 부정적인 환경 영향 (예: 오존층 감소, 광화학적 오존 발생 가능성, 호르몬 붕괴, 지구 온난화 가능성)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13. 폐기시 주의사항

가. 폐기방법

수거하여 재생하거나 밀봉 용기에 담아서 허가된 지역에서 폐기할 것. (관련 법규에 명시된 내용에 따라) 내용물과 용기를 폐기하십시오.

나. 폐기시 주의사항 (오염된 용기 및 포장의 폐기 방법을 포함함)

빈 용기에 제품잔여물이 있을 수 있으므로, 용기를 비운 후에도 제품표지의 경고사항을 따를 것. 빈용기는 재활용 또는 폐기를 위해 허가된 폐기물 처리장에 수집되어야 함.

지정폐기물의 분류번호

사용자, 생산자, 폐기물 처리업체가 협의하여 폐기물 코드를 부여해야 함.

14. 운송에 필요한 정보

IATA

| | |
|---------------------------------|--|
| A. UN number | UN3089 |
| B. UN proper shipping name | Metal powder, flammable, n.o.s. |
| C. Transport hazard class(es) | |
| Class | 4.1 |
| Subsidiary risk | - |
| D. Packing group | II |
| E. Environmental hazards | No. |
| ERG Code | 3L |
| F. Special precautions for user | Read safety instructions, MSDS and emergency procedures before handling. |
| Other information | |
| Passenger and cargo aircraft | Allowed with restrictions. |
| Cargo aircraft only | Allowed with restrictions. |

IMDG

| | |
|-------------------------------|---------------------------------|
| A. UN number | UN3089 |
| B. UN proper shipping name | METAL POWDER, FLAMMABLE, N.O.S. |
| C. Transport hazard class(es) | |
| Class | 4.1 |
| Subsidiary risk | - |
| D. Packing group | II |
| E. Environmental hazards | |
| Marine pollutant | No. |

Em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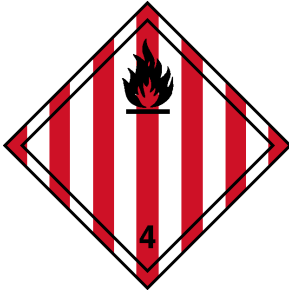
F. Special precautions for user

F-G, S-G

Read safety instructions, MSDS and emergency procedures before handling.

MARPOL 73/78 부록 II 및 IBC 코드에 따른 벌크 상태 운송 IATA; IMDG

해당없음.



15. 법적 규제현황

가.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규제

제조등의 금지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허가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관리대상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특수건강진단 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작업환경 측정대상물질

규제되지 않음.

노출기준설정물질

Tantalum (CAS 7440-25-7)

나. 화학물질관리법 (구: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에 관한 규제

사고대비물질

규제되지 않음.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금지물질

규제되지 않음.

등록대상 기존 화학물질 (PEC) (환경부 고시 제2015-92)

등재되지 않음.

제한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독물질

규제되지 않음.

다. 위험물안전관리법에 의한 규제

라. 폐기물관리법에 의한 규제

폐유기용제중 할로겐족에 해당되는 물질

규제되지 않음.

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마. 기타 국내 및 외국법에 의한 규제

대기환경보전법

대기유해물질

Tantalum (CAS 7440-25-7)

특정 유해 화학물질 및 살충제에 관한 사전통보승인절차 (PIC에 관한 규정, MoE 번호 2014-252, 2014년 12월 31일; 살충제에 관한 규정, RDA 번호 2014-26), 개정된 바에 따라

등재되지 않음.

특정대기유해물질

규제되지 않음.

추가 정보 이 물질의 안전보건자료는 산업안전보건법 제41조에 의거하여 작성된 것임.

목록현황

국가 혹은 지역

목록명

목록 등재 (예/아니오)

한국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ECL)

예

*"예"는 본 제품의 모든 성분들이 해당 국가(들)의 목록에 관한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있음을 나타냄

"아니오"는 본 제품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성분이 해당 국가의 목록에 등재되지 않았거나 면제되지 않음을 나타냄.

16. 그 밖의 참고사항

가. 자료의 출처

ACGIH

EPA: 데이터베이스 확보

NLM: 유해화학물질 데이터베이스 US. IARC 화학물질인자의 노출기준 모노그래프 대한민국.

사고대비물질 (대통령령 제19203호 유해화학물질관리법시행령) 위험물 지정수량 (대통령령 제18406호 위험물안전관리법시행령 별표 1)

대한민국. 제조등의 금지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제29조) 대한민국.

제조 또는 사용 허가대상 유해물질 (대통령령 제13053호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3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 및 물리적인자의 노출기준 (노동부고시 제1986-45 개정) 대한민국. 취급금지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휘발성유기화합물 (환경부고시 제2001-36, 2001년 3월8일 개정) 대한민국. 취급제한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1조) 대한민국. 유해 화학물질

관리법 (TCCL), 기존화학물질목록 (KECI)

유해화학물질관리법, 기존화학물질목록 1997년이전목록

대한민국. 유독물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0조) 대한민국. 화학물질의 배출량조사 및 산정계수에

관한 규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제 14조) 한국. 사고대비물질 (유해화학물질관리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19203호, 별표 2 및 3, 2005년 12월 28일)

한국. OELs (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 노동부 고시 제1986-45호,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3-38호까지의 개정본, 2013년 8월 14일)

한국. 금지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7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4 및 5)

한국. 제한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7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2 및 3)

한국 기존화학물질 목록, 2015년 1월 27일, 환경부 고시 제2016-138호까지의 개정본, 2016년 7월 13일

한국. 유독물질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 등에 관한 법률 "K-REACH" 제20조; 유독물질 및 제한물질·금지물질의 지정 별표 1)

한국.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환경부 고시 제2002-166호, 2002년 11월 8일)

나. 최초 작성일자

2022년 5월 11일

다. 개정 횟수 및 최종 개정일자

해당없음.

추가 정보

Transportation Emergency

Call Chemtrec at:

US: 800.424.9300

International: 703.741.5970

Spain: 900.868.538

Switzerland: 0800.564.402

Chemtrec's toll free, mobile-enabled number in Germany – 0800 1817059

South Korea Toll-free Number – 080-880-0468

책임의 한계

이 문서는 기술적으로 신뢰성있는 것으로 간주되는 출처로부터 얻은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되었으며, 정보는 정확한 것으로 확신된다. 마테리온(Materion)은 여기에 포함된 정보의 정확성에 대해서 명시적인 또는 암시적인 보증을 전혀 하지 않는다. 마테리온(Materion)은 이 정보와 그 제품이 사용될 수 있고 실제 사용조건이 자사의 통제를 벗어나는 모든 조건을 예상할 수 없다. 사용자는 특정한 용도에 이 제품을 사용할 때 가용한 모든 정보를 평가하고 모든 연방, 주, 지역 및 지방 법률, 규칙 및 규정을 준수할 책임이 있다.